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78
----------	-----

2024. 12. 11.(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노금식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11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11월 28일

-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노금식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공모전 개최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식품산업 진흥 및 음식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음식문화 활성화 관련 행사 개최 근거 마련(안 제4조제2호, 안 제4조의2 신설)
 - 충북을 대표하는 새로운 메뉴 레시피 발굴 등 식품산업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요리 경연대회와 같은 음식문화 활성화 행사의 개최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 조항 신설.
 -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 규정 신설.
- 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 제한 (안 제6조제5항)
 - 현행 규정에서 연임 횟수 제한이 없었던 것을 개선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함.

3. 검토보고 요지 (정법주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개정(제정)의 필요성

- 기존 조례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공모전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수행과 시상 등에 대한 근거 규정.
-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근거한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도입하여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본 개정 조례안은 충북 지역 내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 법령 위반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 없음.
-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은 타 법령과 충돌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조치로 타당함.
- 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2조제1호의 영업자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 제명에 맞춰 수정함.
- 안 제4조의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 조항을 넣어 간결하게 정리하고, 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한 요리 경연대회 등 행사 개최·운영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안 제4조의2 음식문화 활성화 개최·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행사 개최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등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및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상장 수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안 제5조4항의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함.
- 안 제6조제5항 위원의 임기를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 위원의 연임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함.
- 그 밖에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4. 11. 19.~'24. 11. 25.)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다. 조례 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었으며,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운영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음.
- 조문 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조문 배치와 표현이 일관되며 이해하기 쉽게 작성됨.

4. 검토의견

-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행사 개최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번호	제778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1월 13일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금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78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13일
발의자 : 노금식, 이태훈, 김호경,
박용규, 변중오, 임영은,
황영호

1. 제안이유

공모전 개최 및 운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충북을 대표할 새로운 메뉴 레시피 발굴 등 식품산업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음식문화 활성화 관련 행사 개최·운영, 공모전 입상자 시상
등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4조제2호, 제4조의2)

나. 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 제한(안 제6조제5항)

(현재) 연임 제한 규정 없음 → (개정) 연임 횟수 2회로 규정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식의약안전과

라. 조례안 예고 : '24.11.19. ~ '24.11.25.(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한 요리 경연대회(이하 “공모전”이라 한다.) 등 행사 개최·운영 지원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음식문화 활성화 행사 개최·운영)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를 대표할 새로운 메뉴 레시피 발굴을 위한 음식문화 활성화 관련 행사를 개최·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음식문화 활성화 행사의 효율적인 개최·운영

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모전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중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운용 계획과 기금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p> <p>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p> <p>2. 3. (생략)</p>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u>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u></p> <p>2. <u>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u></p>	<p>제2조(정의) ----- -----.</p> <p>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자</p> <p>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p> <p>2. 3.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금의 용도) ----- -----.</p> <p>1. <u>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u></p> <p>2. <u>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한 요</u></p>

사업지원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 활동 지원

4.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8.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개·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9.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

리 경연대회(이하 “공모전”이라 한다.) 등 행사 개최·운영 지원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10. <삭 제>

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11. 그 밖에 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11. <삭 제>

제4조의2(음식문화 활성화 행사 개최·운영)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를 대표할 새로운 메뉴 출시피 발굴을 위한 음식문화 활성화 관련 행사를 개최·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음식문화 활성화 행사의 효율적인 개최·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모전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③ (생략)

④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식품위생 업무담당 국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식품위생 관련 사회 단체의 대표자

④ (생략)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생략)

제7조(위원회의 기능) (생략)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③ (현행과 같음)

④ ----- 「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④ (현행과 같음)

⑤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생략)

② <삭제>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0조(수당등의 지급) (생략)

② (생략)

제10조(수당등의 지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식품진흥기금 사업

제2조(기금사업) 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손 소독시설(물품) 또는 칸막이 등 위생·방역시설(물품) 지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한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이외에 기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업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기금사업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2. 의례적 행위
3. 구호적·자선적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가. ~ 자. (생략)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③ (생략)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및 요리대회 등 각종 행사 운영 및 입상자에 대한 시상

2. 비용 발생 요인

- 충북 음식문화페스타 개최

3. 관련조문

- 안 제4조의2(음식문화 활성화 행사 개최)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비용은 지속 발생 예상, 추계는 2025 ~ 2029년까지 5년에 대하여 실시
- 충북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문화 발전 및 조리인재 육성
- 행사 입상자 시상금 : 7,400천원 ※입상자 8명(또는 8개팀)/1년

나. 추계 결과

- 산출과정
 - 물품 등 제작 $10,000\text{천원} \times 1\text{식} = 10,000\text{천원}$
 - 행사장 이용 $(1,350\text{원}/\text{m}^2 \times 3,400\text{m}^2) \times 2\text{일} + 918\text{천원(VAT)} + 1,515\text{천원}$
(전기세, 수도세 등) $= 12,000\text{천원}$
 - 행사 개최·운영비 등 $110,000\text{천원} \times 1\text{식} = 110,000\text{천원}$
- 산출결과
 - 132,000천원/년,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660,000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식품진흥기금)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